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47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구자근 · 강승규 · 김선교
최수진 · 김승수 · 박성민
강선영 · 정동만 · 이상휘
박형수 · 강명구 · 유상범
김도읍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변기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그런데, 졸음쉼터 화장실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청소·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시설 관리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위생 불량 및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휴게시설”을 “휴게시설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줄음
쉽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시설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p> <p>1. ~ 5. (생략)</p> <p>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p> <p>7. ~ 17. (생략)</p>	<p>제3조(적용 범위) ----- ----- ----- ----- -----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휴게시설 및 같은 호</u> <u>바목에 따른</u> <u>줄임선택터</u></p> <p>7. ~ 17. (현행과 같음)</p>